성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 법령 및 조항을 정비하고 웹 호완성·접근성 보장과 웹사이트 총량제 시행 및 운영 실태 점검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웹 호완성·접근성 준수 근거 마련 (안 제3조제5항)
나. 홈페이지 설치·운영시 정보화부서와 사전협의 및 운영실태 점검. 홈페이지 통·폐합 근거 마련(안 제9조)
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 법령 변경(안 제2조제4호, 제10조, 안제2조 제7호, 제7조,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의견없음〔2017. 10. 12. ~ 11. 1〕
라. 성별영향평가분석 : 개선사항 없음
마. 규제심사 : 심사대상 아님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 법령 조항을 반영하고 웹 호환성·접근성 보장과 웹사이트 총량제 시행 및 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안 제3조에서 장애인, 고령자 등이 쉽게 홈페이지를 접속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 안 제9조에서 웹사이트 총량제 시행 및 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홈페이지 구축 시 사전협의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13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법리 검토결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웹 호완성·접근성 보장과 웹사이트 총량제 시행 및 운영 실태 점검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